

# 「2025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공고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20.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1. 사업목적

-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 지원

## 2.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 설비개선·설치,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분야) ①온실가스 저감, ②ICT, ③대기오염 저감, ④수질오염 저감, ⑤폐기물 배출 저감, ⑥자원순환, ⑦환경보건, ⑧기타 시설 [덧붙임1 참조]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⑧ 중 ①, ②를 반드시 포함하여 3개 분야 이상 선택하여 신청)

※ 시설 1개당 지원분야 1개만 적용 가능(그 외 분야에서의 효과가 있을 경우 부가효과로 제시)

- (지원기간) 협약일 ~ 2025.11.30.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80개사 내외 선정)

※ 지원금 및 예산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 총사업비 구성 비율 >

| 신청기업 유형 | 국고보조금  | 민간부담금  |
|---------|--------|--------|
| 중소기업    | 60% 이하 | 40% 이상 |
| 중견기업    | 50% 이하 | 50%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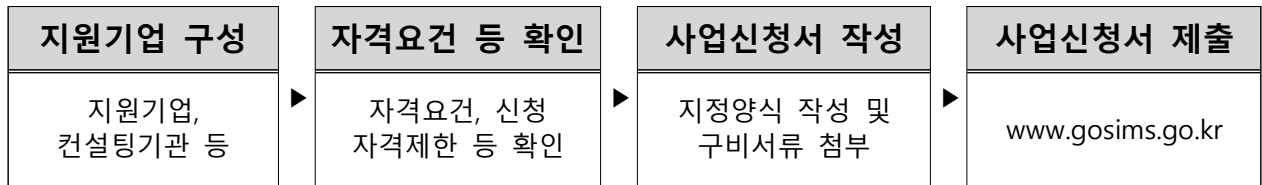
### 3. 공고 및 접수 일정

- (공고기간) 2024. 12. 20.(금) ~ 2025. 02. 14.(금) 까지
- (접수기간) 2025. 01. 15.(수) ~ 2025. 02. 14.(금) 까지

※ 접수는 e나라도움을 통해서 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시 불인정

###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사업공고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입력·제출



※ 시스템 가입 및 사업신청 방법 등은 e나라도움 사용자매뉴얼 참조(e나라도움소개→사용자매뉴얼)

#### [ e나라도움시스템 사업신청 절차 ]

- ①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 ⑥ 공모명 선택(2025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후 [신청서 작성] 클릭  
⇨ e나라도움에 작성 및 첨부서류(사업신청서 등) 파일 첨부 ⇨ [신청서제출] 클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제출서류 1식 [덧붙임2 참조]

※ 한국환경공단 또는 e나라도움의 사업 공고문에서 제공하는 압축파일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양식의 임의변경 시 탈락처리

- (참고사항) 제출서류 작성 시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사업계획서 샘플 및 우수사례, 자주하는 질문/답변 참조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접속 후, 국민참여→동반성장→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선택

☞ <https://www.keco.or.kr/web/lay1/S1T264C265/contents.do>

## 5. 지원자격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함
- 관리지침 제10조(신청자격의 제한)에 따라 다음의 하나에 해당(공고일 기준)하는 신청기업에 대하여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 참여제한 기준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본사업 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수행 배제 기간 중인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

$$\text{자본잠식률(\%)} = [(\text{자본금} - \text{자기자본}) / \text{자본금}] \times 100$$

-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령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최근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최근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목록에 포함된 사업장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인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목록에 포함된 사업장인 경우
-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해당 과제에 한함)
- 소송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진행중인 사업장인 경우

## 6.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관리지침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및 규정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기업에게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비목 중 유형자산 및 건설비에 대해 계약전수별 본 견적서 1개, 비교견적서 2개 이상을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와 함께 증빙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
- (사전 계약체결 불가) 협약 체결 이전에 설비제조업체(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해당 신청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협약 체결 이후, 사전 계약체결이 확인될 경우 관련 보조금 취소
-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협약 체결 시, 협약기간에 가산기간(3개월)을 포함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보험료 기업 자부담)
- (원가계산서 제출) 협약 체결 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 제출 필요(소요 비용 기업 자부담)
- (계약 체결 규정 준수)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중요재산 등록) 지원기업은 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준공 및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설비 처분제한)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에 성과물을 양도,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5조를 준용하여 적용
-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 5년간 사업효과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함
- (컨설팅 기관) 신청기업은 컨설팅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다만, 컨설팅 비용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 가능)
- 동 사업의 국고보조금 이외에 지원기업의 컨설팅기관 지정·위탁 및 컨설팅 추진 결과, 시설의 설치·구축 등의 안전성·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민간부담금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과 무관하고, 정부 및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 (인·허가 사항) 지원과제 추진에 있어 행정 인·허가사항(개발제한 구역, 그린벨트, 불법건축물 등)으로 인한 설치 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 등 발생 시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민원은 1개월 이내에 해결 불가능할 경우에 한함)
- (기타) 임대공장의 경우 본 사업 협약종료일(2025.11.30.)로부터 5년 이상 임대기간이 명시된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관리)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며, 지원기업은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지침 미숙지 및 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7. 추진절차

| 절차                   |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   | 신청기업   |
|----------------------|--|--|
|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공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신청서 제출</li> </ul>   |
| 지원과제 선정(3~4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검토</li> <li>■ 서면 및 선정평가위원회 개최</li> <li>■ 현장확인 실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선정평가 참석 (수행책임자에 의한 발표)</li> <li>■ 현장확인 응대</li> </ul>      |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5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체결</li> <li>■ 보조금 선금 지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서류보완</li> <li>■ 협약체결 서류 제출</li> </ul>                    |
| 진도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간보고서 검토</li> <li>■ 진도관리 및 잔금 지급 검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간보고서 제출(익월 10일 기한)</li> <li>■ 진도관리 수검</li> </ul>           |
| 사업완료 (~ 1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상황 모니터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운전 및 사업성과 증빙자료 준비</li> <li>■ 사업결과보고서 작성</li> </ul>         |
| 보고서 제출 (~ 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결과보고서 검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li> </ul>                                  |
| 결과평가 및 정산 (~'26년 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평가위원회 개최</li> <li>■ 사업비 정산 결과 통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평가위원회 참석</li> <li>■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li> </ul> |
| 사후관리 ('26년 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관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효과보고서 제출</li> </ul>                                       |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8. 선정 및 평가

### < 지원 대상 선정 절차 >

| 공고·접수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현장조사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
| 신청서 제출 | 자격요건 검토 | 서류평가<br>(60점 미만 탈락) | 수요기관<br>현장확인 | 발표평가<br>(60점 미만 탈락) | 추진계획<br>보완 및 협약 |
| 신청기업   | 공단      | 평가위원회               | 공단           | 평가위원회               | 공단-지원기업         |

- (사전검토) 참여제한(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유사과제 해당여부, 휴·폐업 기업 등) 등 사전검토를 통한 부적합기관 탈락 조치 및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보완 요청
- (서면평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부합성, 사업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 ※ 서면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당해연도 사업 계획 물량의 1.5 배수 범위의 신청과제에 대하여 선정평가 대상 선정
- (현장조사)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 기업 현장조사 실시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실효성, 사업수행체계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 ※ 선정평가 시 수행책임자 또는 대표자가 발표 및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업 임직원 1인 배석 가능

### <서면 및 선정평가 평가항목>

| 구분            | 평가항목                              | 비고  |
|---------------|-----------------------------------|-----|
| 서면평가<br>(1단계) | ▪ 사업목적 부합성(부합성, 달성도, 범위 다양성 여부)   | 40점 |
|               | ▪ 사업 적정성 및 기업역량(목표 적절성, 재무현황)     | 25점 |
|               | ▪ 사업예산 합리성(예산 적정성, 사업비 편성 타당성)    | 15점 |
|               | ▪ 효과성(환경·사회적 기대효과, 온실가스저감 효과)     | 20점 |
| 선정평가<br>(2단계) | ▪ 사업계획(사업계획 구체성, 실효성, 사업비 산정 적정성) | 30점 |
|               | ▪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수행체계 적절성, 사업효과성 등)  | 40점 |
|               | ▪ 시설 유지관리(유지관리 편의성, 시설 안전성)       | 20점 |
|               | ▪ 기대효과(확산성)                       | 10점 |

※ 서면평가종합점수 = 서면평가점수 + 가·감점 [덧붙임3 참조]

※ 최종종합평가점수 = (서면평가종합점수 × 0.3) + (선정평가점수 × 0.7) [덧붙임3 참조]

\*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당해 연도 사업비를 고려해 “지원기업”과 “후보기업” 분류

## 9. 협약체결

- 최종 선정 후, 사업계획서, 원가계산서 등 **협약체결 관련 서류**가 구비 완료된 수행기관에 한하여 **협약 진행**
  -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은 조정된 국고보조금 및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 작성**하여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의 사업비는 협약체결 전(前),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 사업계획서 수정이 완료된 주관기관은 협약서를 작성, 지급보증보험증권, 신규개설 통장 사본, 민간부담금 부담 협약서 및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증,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
  - ※ 협약기간에 가산기간(3개월)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보험료 기업 자부담 필요, 제출기한 내 협약체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 조치)
- **협약에 관련된 모든 증빙과 민간부담금 입금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협약 체결**
  - ※ 국고보조금은 민간부담금이 선 입금(선금 70%, 잔금 30%) 된 후 지급

## 10. 진도관리

-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은 지원기업 진도관리(월간보고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행실태 및 사업 계속 여부 결정
  - ※ 진도관리 결과 “계속”인 경우에만 잔금(30%)을 추진 진도에 따라 차등 지급

## 11. 결과보고 및 평가

- **(결과보고)**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목표 달성 실적 등을 포함한 관리지침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결과평가)**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은 사업결과보고서가 모두 제출된 후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결과평가 실시
  - 결과평가 결과 평점 60점 이상 “성공”, 60점 미만 “실패”로 분류
    - ※ “실패” 판정된 지원기업 및 사업결과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제한 및 국고보조금의 환수 등 제재조치 진행

## 12. 사업비 지급, 계상, 관리 및 사용

- (지급) 국고보조금 7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진도관리를 통해 사업수행의 계속 여부가 결정된 지원기업에 한하여 30% 잔액을 추진 진도에 따라 차등 지급
- (계상·관리·사용) 관리지침 [별표 2]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업비 계상 후 국고보조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 계좌와 연결된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하여 집행 [덧붙임4 참조]
- (정산) 검증기관(회계법인)의 검증이 완료된 정산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 국고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지원기업은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며, 국고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원기업은 위의 감사인과 별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반사업 등에 대한 제재) 지원기업이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

## 13. 성과활용

-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사후관리) 사업 종료 후 5년간 사업효과보고서를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사후관리수행 다음연도의 3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책임자 변경 등 사업내용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성과활용) 지원기업의 성과물은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이 본 사업의 홍보 및 우수사례 선정, 선도모델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14. 문의처

- (전담기관) 한국환경공단 K-eco연구원 ESG기업지원부  
☎ 032-590-4808, 4908
- (e나라도움) 회원가입, 사업신청, 시스템 매뉴얼 안내 등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고객센터 ☎ 1670-9595
- (조달청) 기업등록, 계약체결방법 안내 등  
국고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고객센터 ☎ 1588-0800

1.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시설분야            | 지원 대상   |
|--------------------|-----------------|---|
| 온실가스<br>저감<br>(필수) | 연·원료 전환시설       | ○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br>-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br>○ 저탄소 원료사용을 위한 설비<br>- 코크스, 납사 등 대체재 생산 또는 적용설비 등  |
|                    | 신재생에너지 시설       | ○ 화석연료를 절감하기 위한 자체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시설<br>- 재생에너지 발전설비(ESS 포함) 등<br>※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에 한하며,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br>○ 폐기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br>- 폐플라스틱 등의 열분해에 의한 연료화 설비 등  |
|                    | 에너지 회수·절감       | ○ 미활용 열, 폐열 폐압, 차압 또는 폐가스 등을 회수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시설<br>- 폐열보일러, 폐가스 공급시설, 스팀회수시설, 열교환기, 스팀터빈발전, 차압구동 장치 등<br>○ 고효율 시설 설치 또는 교체<br>- 인버터적용 시설, 콤프레샤, 펌프, 보일러, 냉동기 교반기, 변압기 등 |
|                    | 탄소포집·저장·활용시설    | ○ 탄소 포집공정 설비<br>- 흡수탑, 건식·습식 유동층, 분리막 설비 등<br>○ 탄소 저장을 위한 설비 등<br>○ 탄소 활용을 위한 설비 등  |
|                    | 건축물에너지 절감       | ○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br>- 사무실 내 냉·난방시설을 제외한 지붕 및 벽면의 단열, 단열창호, LED 조명 등<br>○ 기타 건물의 에너지 절감하기 위한 시설<br>- 자연채광, 지붕 및 벽면의 녹화 등  |
|                    | 오염방지시설<br>에너지절감 | ○ 오염방지시설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시설<br>- 인버터 장착 블로워, 고효율 스크러버 등   |

| 지원분야        | 시설분야            | 지원 대상  |
|-------------|-----------------|--|
| ICT<br>(필수) | 사업성과모니터링·<br>제어 | ○ 오염물질 저감 등 개선설비 전반의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시설<br>- 모니터링 제어시스템,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 관련 계측기, 제어장비, 센서 등   |
| 대기오염<br>저감  | 대기오염방지          |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br>- 집진장치, 흡착시설, 먼지제거장치 등   |
| 수질오염<br>저감  | 수질오염방지          | ○ 오·폐수를 정화·재이용하는 시설<br>- 오·폐수처리시설, 재순환시설, 집수장치, 포기장치, 여과장비, 유수분리기, 펌프류 등<br>○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약품(유해물질 포함)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설<br>- 약품자동조절장치 등 |
|             | 비점오염 저감         | ○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침투시설<br>- 투수성 포장, 침투도랑/저류지, 나무화분 여과장치 등<br>○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식생형 시설<br>- 식생수로, 식생체류지 등                               |
| 폐기물<br>배출저감 | 폐기물 저감          | ○ 폐기물 발생을 절감하는 시설<br>- 탈수시설, 불량제품 생산절감시설 등   |
|             | 유해원료 사용절감       | ○ 유해성 원료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한 시설<br>- 원료 투입량 조절장치, 저장탱크 등  |
| 자원순환        | 빗물의 재이용         | ○ 공장 내에 유입되는 빗물을 재이용하기 위한 시설<br>- 우수저장조, 여과시설, 펌프시설 등  |
|             | 폐기물 재활용         | ○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br>- 선별기, 파쇄기, 정제시설, 유기용제 회수시설 등<br>○ 폐기물을 재활용한 재료를 이용하는 건축시설<br>- 재활용벽돌, 재활용석고, 재활용유리 등                        |

| 지원분야  | 시설분야     | 지원 대상   |
|-------|----------|---|
| 환경보건  | 악취 저감    | ○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br>- 포집장치, 배기장치, 세정장치, 흡착장치 등<br>○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시설<br>- 실내 환기 또는 공조설비 개선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제어설비 등 |
|       | 소음·진동 저감 | ○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시설<br>- 소음기, 방음벽, 흡음·차음 판넬 등   |
|       | 환경안전     | ○ 공장 내 환경안전을 위한 시설<br>- 넘어짐·추락 방지설비, 끼임방지 덮개, 가스감지기, 긴급샤워시설 등<br>※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기타 시설 |          | ○ 기타 친환경적 요소를 도입하여 추진하는 시설<br>※ 녹지조성 및 수목 식재 등 공정 중 발생 폐기물 저감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설비 제외<br>※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지원분야는 필수 2개 분야(온실가스 저감, ICT)를 포함하여 3개 이상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 시설 1개당 분야 1개만 적용 가능(그 외 분야에서의 효과가 있을 경우 부가효과로 제시)
- ※ 지원범위는 설치비용에 한하며, 전력 및 폐기물처리 비용 등 운영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 시설은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제시된 예시 외에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은 지원 가능

## 2. 사업비 구성 비율

| 지원기업 | 사업비 구성 | 비율(%)        |
|------|--------|--------------|
| 중소기업 | 국고보조금  | 총사업비의 60% 이하 |
|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40% 이상 |
| 중견기업 | 국고보조금  | 총사업비의 50% 이하 |
|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50% 이상 |

비 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 국고보조금 비율의 상한 기준 적용 시 반올림을 하지 않는다.

**덧붙임 2**

**신청 관련 제출서류**

| 구분       | 순번 | 첨부서류 | 비고                              |   |
|----------|----|------|---------------------------------|---|
| 작성<br>서류 | 1  | 필수   | [별지1] 사업 신청서 작성양식               |   |
|          | 2  | 필수   | 사업계획서                           |   |
|          | 3  | 필수   | [별첨1]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   |
|          | 4  | 필수   | [별첨2]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   |
|          | 5  | 필수   | [별첨3]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   |
|          | 6  | 필수   | [별첨4] 안전보건 서약서 및 안전보건계획서        | ※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시 신청기업 자체 양식 사용 가능   |
| 구비<br>서류 | 7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 8  |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   |
|          | 9  | 필수   | 법인인감증명서                         | ※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
|          | 10 |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
|          | 11 | 필수   | 최근 2개년 재무제표<br>(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
|          | 12 | 필수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br>중견기업확인서          |   |
|          | 13 | 필수   | 공장등록증명서 등 제조업 증빙<br>서류          | ※ 임대공장일 경우 임대계약서 포함   |
|          | 14 | 해당시  | 가점 현황 증빙 사본<br>(가점표 00쪽 확인)     |   |
|          | 15 | 필수   | 시설의 주요구성 자료(개략도 등)              | ※ 레이아웃 공정도 개략도 등 모든 설비에 대한 자료 제출 필요   |
|          | 16 | 필수   | 시설의 사양파악 자료                     |   |
|          | 17 | 필수   | 사업비 사용계획 산출내역에<br>대한 견적서 등 근거자료 | ※ 유형자산 및 건설비는 건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본견적서 1개, 비교견적서 2개 제출 필요<br>※ 환경전문공사, ICT설비 및 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각각 시공관련면허(환경전문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를 보유한자가 발급한 내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업등록증첨부 |
|          | 18 | 필수   | 환경법적기준<br>(배출허용기준) 준수 증빙서류      | ※ 최근 6개월 이내 지도점검 결과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1. 서면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방법   |
|-------------------------|-------------------------|--|
| 사업목적<br>부합성<br>(40)     | 사업목적 부합성<br>(10)        | - 제시된 과제의 추진배경 및 도입 필요성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추진 목적과 부합하는지 평가한다.<br>- 구축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타 신청기업에 우선하여 추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지 평가한다. |
|                         | 사업목적 달성도<br>(10)        | - 과제에서 설정한 목표가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정도를 평가한다.  |
|                         | 사업 적용범위의 다양성<br>(20)    | - 단편적인 공정개선보다는 다양한 사업범위(분야)를 적용하여 친환경·저탄소로의 녹색 전환(온실가스 저감, 자원순환 등)을 위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사업적정성<br>및 기업역량<br>(25) | 목표·계획 적절성 및 체계성<br>(15) | - 환경개선 효과 등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적절성 및 체계성을 평가한다.<br>- 사업계획 제출 시 제시된 과제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                         | 기업의 재무현황<br>(10)        | - 기업의 신용도, 현금흐름등급 및 재무재표를 검토하여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한다.  |
| 사업예산<br>합리성<br>(15)     | 사업예산 적정성<br>(10)        | - 사업비 계상 시 사업관리지침의 준수 여부와 설비별 사업예산의 편중여부를 평가한다.<br>-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보조사업 수혜 이력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편중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
|                         | 사업비편성 타당성<br>(5)        | - 개선설비별 사업비의 산출이 타당한지를 평가한다.   |
| 효과성<br>(20)             | 환경·사회적 기대효과<br>(10)     | - 사업추진으로 인한 환경적 효과 및 사회적 기대효과를 평가한다.   |
|                         | 온실가스저감 효과<br>(10)       | -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 2. 선정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방법   |
|------------------------|--------------------|--|
| 사업계획<br>(30)           | 사업계획의 구체성<br>(10)  | -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설비의 세부사양 및 설치장소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                        | 사업계획의 실효성<br>(10)  | - 제시된 사업계획이 국내 산업계에 효과를 거둘수 있는 내용인지를 평가한다.                       |
|                        | 사업비 산정 적정성<br>(10) | - 투입하는 예산 대비 산출효과의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한다.                        |
| 사업수행체계<br>및 역량<br>(40) | 사업수행체계 적절성<br>(15) |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 시스템, 설비 관리 등의 수행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사업의 이해도<br>(10)    | - 신청기업이 본 사업의 추진 목적과 과제의 세부추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을지를 평가한다. |
|                        | 사업의 효과성<br>(15)    | - 과제의 선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의 정도에 대하여 평가한다.                     |
| 시설의<br>유지관리<br>(20)    | 유지관리 편의성<br>(10)   | - 설비의 개선 후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시설의 안전성<br>(10)    | - 과제 추진 및 설비의 운영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기대효과<br>(10)           | 사업 확산성<br>(10)     | - 타 공장에의 보급 및 확산 가능성을 평가한다.                                      |

※ 최종종합평가점수 = (서면평가의 종합평가점수 × 0.3) + (선정평가점수 × 0.7)

### 3. 가점 및 감점 기준

#### ○ 가점

| 항 목   | 가 점 | 비 고  |
|---|-----|------|
| ① 신청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3   | 증빙제출 |
| ② [환경부] ESG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ESG 경영수준을 평가받은 기업(최근 3년 이내)<b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사업       | 3   | 증빙제출 |
| ③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br>*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및 지자체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관련 조례 | 1   | 증빙제출 |
| ④ 녹색인증 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內)<br>*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              | 1   | 증빙제출 |
| ⑤ 환경경영 우수기업(평가등급 A~AAA)<br>*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                        | 1   | 증빙제출 |
| ⑥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지정서 지정기간 內)<br>*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                       | 1   | 증빙제출 |
| ⑦ 신청한 공장이 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기업  | 1   | 증빙제출 |
| ⑧ [환경부] CBAM 대응 컨설팅을 받은 기업(최근 3년 이내)<br>*한국환경공단 지원사업                          | 3   | 증빙제출 |

※ 가점은 항목별 중복은 가능하나, 항목 내에서 중복은 불가능

※ 가점은 중소기업 가점(①항) 3점과 나머지 항목(②항~⑧항)의 합계(최대 5점)로 총 8점까지만 부여

#### ○ 감점

| 항 목  | 감점 |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 구축사업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협약 중지(협약 정식 체결 전 포함)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 5점 |



## 덧붙임 4

## 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

| 구분       |           | 사용 용도   | 계상 및 산정기준   |
|----------|-----------|---|---|
| 비목       | 세목        |   |   |
| 유형<br>자산 | 자산<br>취득비 |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기계, 기구 등의 구입비                     | 1. 실소요 경비를 계상<br>2. 구입한 장비의 설치 시 소요되는 금액을 내역에 포함  |
| 건설비      | 설계비       | 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1.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함<br>2. 교통·환경영향평가, 설계보상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제외                                  |
|          | 시설비       | 건물, 공작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 1. 시설제작 경비<br>2. 자재 및 시공에 소요되는 세부 내역 포함   |
| 운영비      | 일반<br>용역비 |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1. 지원기업이 해당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산정 (최대 30백만원까지 가능)<br>2.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비 등<br>3. 정산관련 검증용역비 (최대 2백만원까지 가능) |
|          | 일반<br>수용비 | 시험분석 수수료  | 1. 실소요 경비를 계상<br>- 공인인증시험기관 및 전문기관 분석 수수료<br>※ 분석 시약 및 키트, 분석기기 산정 불가                               |

※ 사업과 직접 관련 비용만 산정 가능하며, 상기 제시된 사용용도 외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불가  
 ※ 미지원 항목 : 부가가치세, 기존시설 철거비, 조달수수료, 보험료 등